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8619
----------	-------

발의연월일 : 2022. 12. 2.

발 의 자 : 김성원 · 김정재 · 김희곤
노용호 · 박대수 · 박덕흠
정찬민 · 조명희 · 최영희
태영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최근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 환경 변화로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년지원과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는바, 그 제정 취지에 맞추어 농어촌청년 등에 지원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어촌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에 청년을 포함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어촌 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법률 제 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행하는”을 “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수산업인·어촌청소년·어촌여성”을 “수산업인, 어촌 청소년·청년·여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교육훈련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u>수산업인 · 어촌청소년 · 어촌여성</u>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영 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 사업 다. · 라. (생 략) ② (생 략)	제2조(정의)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 ----- 하는 -----. 가. (현행과 같음) 나. <u>수산업인, 어촌 청소년 · 청년 · 여성</u> ----- ----- ----- ----- 다. · 라.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